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(권한의 위임사항) 별표중 “보건과 소관 제32호 내지 제40호와 제68호내지 제69호 및 공업과 소관 제10호, 제15호내지 제18호”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	일련 번호	사 무 영	규 칙 관 련 법 규 정	일련 번호	사 무 영	규 칙 관 련 법 규 정
보건과	1-31	(생 략)	(생 략)	보건과 1-31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32	○ 독극물관매업 등록 및 허가	독물 및 독 물 에 관 한 법 률 제 12 조 제 13 조	32	(삭 제)	
	33	○ 동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	동 법 제 26 조	33	(삭 제)	
	34	○ 독극물관매업의 폐업, 휴업, 재 개업 신고 수리	동 법 시 행 규 칙 제 20 조	34	(삭 제)	
	35	○ 동 시설의 개수, 사용 금지 용기 나 포장의 교체 명령	동 법 제 25 조	35	(삭 제)	
	36	○ 동 등록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	동 법 제 24 조	36	(삭 제)	
	37	○ 시험상 필요한 독극물의 수거	상 동	37	(삭 제)	
	38	○ 독극물의 판매 업 등록대장 비치 및 등록증 교부	동 법 시 행 규 칙 제 7 조	38	(삭 제)	
	39	○ 독극물 판매업 자의 독극물 판 리자 변경 신고	동 규 칙 제 18 조	39	(삭 제)	

현		행		개 정 (안)			
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거법령	분야별	일련 번호	사 무 명	근거법령
	40	○ 독극물 판매업 자 등록사항 변 경	동규칙 제 19조		40	(삭 제)	
	41-67	(생 략)	(생 략)		41-67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68	○ 안마사 자격증 교부	안 마 사 에 관 한 규 칙 제3조		68	(삭 제)	
	69	○ 안경업소에 관 한 다음의 권한			69	(삭 제)	
		가. 안경업소의 개설등록	의료기사법 제13 조 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			(삭 제)	
		나.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교부	동법시행규 칙 제16조			(삭 제)	
		다. 안경업소 등록 사항 변경 및 휴·폐업신고 신고수리	동 법 제 13 조의 5			(삭 제)	
		라. 안경업소의 지도감독	동법 제13 조의 6			(삭 제)	
		마.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	동법 제13 조의 7 및 제13조의 8			(삭 제)	
		바. 과태료의 부 과 및 징수	동 법 제 17 조의 3			(삭 제)	